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857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재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4. 16 —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4. 4. 20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4. 8. 17 —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정이유

○ 국내최초의 공룡발자국 화석 발견지이며, 세계3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고성의 우수한 자연문화유산을 지역특화화 시키기 위해, 국내 최초의 자연사 세계엑스포로서 고성군에서 범국제적인 국제행사인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법인의 명칭 및 기구 (안 제2조)

나. 법인의 재산 (안 제4조)

다. 법인의 운영비 지원 (안 제5조)

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검사 (안 제7조)

마. 공무원의 파견근무 (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은 200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민법 제32조에 비영리 사업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공익법인설립허가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로 되어 있으며,

○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고성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고성군)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제1항에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기관, 공공단체, 국내외 교육기관, 기타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입법예고 등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새로운 재정부담을 필요로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23조 규정에 지방 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3조 제3

호 엑스포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조례안 제4조 제1호 고성군의출연금 조례안 제8조 공무원의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맞게 관련 정관 변경과 재단법인 명칭변경에 따라 기구도 체제에 맞도록 하고, 공무원을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에 파견 발령 등 수정조례에 맞도록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지?

● 답 : 예, 수정조례에 부합되도록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6. 토　　론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조례명칭을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조례"를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 로 변경

○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제1항)

○ 재단의운영비 및 엑스포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수정(안 제5조)

○ 출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 2)

○ 출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 3)

8. 심사결과

○ 2004. 8.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 857 호
의 결 년 월 일	2004. 8. 25. (제117회)

의결사항	수정가결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년월일	2004. 4. 16.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857

제출년월일 : 2004. 4. 16.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정이유

국내최초의 공룡발자국 화석 발견지이며, 세계3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고성의 우수한 자연문화유산을 지역특화 시키기 위해, 국내 최초의 자연사 세계엑스포로서 고성군에서 범국제적인 국제행사인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인의 명칭 및 기구 (안 제2조)
나. 법인의 재산 (안 제4조)
다. 법인의 운영비 지원 (안 제5조)
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검사 (안 제7조)
마. 공무원의 파견근무 (안 제8조)

3. 참고사항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독)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 (파견근무)

4. 입법예고

○ 기간 : 2004. 3. 9 ~ 2004. 3. 28.(20일간)
(특이사항 없음)

5.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명칭 및 기구) ①고성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재단에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재단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엑스포 주제관 및 전시시설 설치와 부지조성
3. 엑스포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4. 엑스포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기타 엑스포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법인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고성군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제5조(출연금) 군수는 재단의 운영비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제4조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 2(출연금의 운용) 재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출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출연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출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 3(출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출연금운용계획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보고, 검사 등) ①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 파견) ①군수는 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성군에 귀속된다.

제10조(공공시설의 사용) 군수는 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이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